

의안번호	2203649
의 퇴 인	박해철 의원
회 답 일	2024.11.5.
추 계 번호	24B35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7,000만원~2억 4,000만원, 2030년 1억 8,000만원~2억 4,000만원 등 장래에 발생할 명단공개·신용제재 건수에 대한 증가율 가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8억 6,000만원~11억 7,000만원(연평균 1억 7,000만원~2억 3,0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시나리오1(A1)	1.7	1.6	1.6	1.7	1.7	8.2	1.6
	시나리오2(A2)	2.3	2.2	2.2	2.3	2.3	11.3	2.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B)		0.08	0.08	0.08	0.08	0.08	0.42	0.08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1(C1=A1+B)		1.7	1.7	1.7	1.7	1.8	8.6	1.7
시나리오2(C2=A2+B)		2.4	2.3	2.3	2.3	2.4	11.7	2.3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항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u>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u> 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함(제2항)	
2	안 제43조의2 (채불사업주 명 단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 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함. 이하 “채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채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채불 총액이 <u>2천만원</u>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43조의4 (상습채불사업 주의 결정)	<u>상습채불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함(제1항)</u> 1. 임금등 채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이상 채불한 사업주 2. 임금등 채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채불하고, 채불총액이 <u>2천만원</u> 이상인 사업주 제1항에 따라 상습채불사업주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제2항)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임금등 채불횟수의 산정 및 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4	안 제43조의5 (상습채불사업 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제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상습채불사업주의 임금등 채불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제1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u>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의무규정
		<u>상습채불사업주의 임금등 채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제2항)</u>	
		<u>제1항에 따른 임금등 채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함(제3항)</u>	
5	<u>안 제43조의6 (채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등)</u>	<u>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채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5에 따른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음(제1항)</u> <u>1. 법원행정처장에게 채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u> <u>2. 국세청장에게 채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에 관한 자료</u> <u>3. 국세청장에게 채불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u> <u>4. 근로복지공단에게 채불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u> <u>5.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u>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제2항)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함(제3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 미대상 – 개정안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참고로 근로자가 임금채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선고와 함께 지연이자를 결정하므로 추가적인 재정이 수반되지 않음
2	안 제4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	• 추계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채불사업주의 명단공개 기준을 채불총액 3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문 참조
3	안 제43조의4(상습채불사업주의 결정)	○	• 추계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상습채불사업주를 규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문 참조
4	안 제43조의5(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제한 등)	—	• 미대상 –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개정조항은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이 감소할 경우 재정지출이 변화할 수 있으나, 재정지출의 감소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님
5	안 제43조의6(채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등)	—	• 미대상 –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해당 상습채불사업주의 임금등 채불자료를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하는 업무는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무원 기관부담 요율 및 공무원임금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안 제43조의2)

- 개정안은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기준을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추가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체불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등의 업무로 인해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10년(2014~2023년)간 명단공개·신용제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최근 10년간 명단공개·신용제재 현황: 2014~2023년

(단위: 건)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명단공개	290	183	344	116	403	365	385	362	150	265
신용제재	505	290	558	191	675	607	673	647	292	438

주: 연도별 실시인원

자료 : 고용노동부

-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및 공무원 기관부담 요율, 공무원임금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10월 기준,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 기관부담 요율	13.114	13.210	13.305	13.399	13.494	13.584
공무원임금상승률	1.9	1.9	1.9	1.9	1.9	1.9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0	2.0	2.0	2.0	2.0

(1)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충원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공무원의 정원이 규정되어 있고, 정원을 초과하여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국가 공무원의 규모가 변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
 - **(필요인원)** 현재 고용노동부는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자체 행정력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5급 1인과 7급 1인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현재 1인당 처리건수와 고용노동부의 인적 구성을 토대로 산출
 - (1인당 처리건수) 최근 10년 평균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건수(774건)를 행정인력 2인이 처리한 것을 참고하여 1인당 처리건수를 387건으로 산출
 - (예상건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건수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최근 10년간 최대값(1,078건)을 기준으로 장래에 발생할 예상건수를 현행 대비 20%, 30%, 50% 증가하는 것으로 나누어 산출
 - 산출 결과 20% 증가하는 경우와 30% 증가하는 경우 필요인원이 동일하므로, 시나리오는 20%(30%) 확대되는 시나리오1과 50% 확대되는 시나리오2로 구성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추가 필요인원이 2인일 경우 필요인원은 5급 1인과 7급 1인으로 구성되고, 3인일 경우 5급 1인과 7급 2인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여 산출

[표 3] 필요인원(추정치): 2026~2030년

(단위: 건)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1인당 처리건수(A)	387	387	387	387	387
예상 건수(B)					
- 20% 확대	1,294	1,294	1,294	1,294	1,294
- 30% 확대	1,401	1,401	1,401	1,401	1,401
- 50% 확대	1,617	1,617	1,617	1,617	1,617
필요인원(C=B/A, 명)					
- 20% 확대	4	4	4	4	4
- 30% 확대	4	4	4	4	4
- 50% 확대	5	5	5	5	5
추가 필요인원(D=C-2, 명)					
- 20% 확대	2	2	2	2	2
- 30% 확대	2	2	2	2	2
- 50% 확대	3	3	3	3	3

주: 필요인원은 올림으로 산출

- (인건비) 추계기간 동안 연도별 추가고용인원에 2025년 예산안 기준 직급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상승률을 적용²⁾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은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기관부담금 요율(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

[표 4]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필요인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인	5급(A1)	1명	83	85	86	88	89	431
건	7급(B1)	1명	49	50	51	52	53	257
비	소계(C1=A1+B1)	2명	132	135	137	140	143	688
시나리오2								
인	5급(A2)	1명	83	85	86	88	89	431
건	7급(B2)	2명	99	101	103	105	107	513
비	소계(C2=A2+B2)	3명	182	185	189	192	196	944
기관부담금								
시나리오(D1)		17	18	18	19	19	92	18
시나리오(D2)		24	25	25	26	27	127	25
소계(E1=C1+D1)		150	153	156	159	162	780	156
소계(E2=C2+D2)		206	210	214	218	223	1,071	214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5급은 고용노동부 본부 소속 직원 인건비 중 봉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의 합계액이며, 7급의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 소속 직원 인건비 중 봉급, 성과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의 합계액임

(2) 자산취득비 및 기본경비

- 자산취득비는 2020년 기준 공공기관 직원 1인당 589.2만원³⁾에 연도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PC·사무집기 등 구입비는 2026년 첫해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기본경비는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인건비 총액에 3.78%를 적용하여 산출

[표 5] 자산취득비 및 기본경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자산취득비					
시나리오1(A1)	10	—	—	—	—
시나리오2(A2)	15	—	—	—	—
기본경비					
시나리오(B1)	6	6	6	6	6
시나리오(B2)	8	8	8	8	8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6,600만원~2억 2,900만원, 2030년 1억 6,800만원~2억 3,100만원 등 장래에 발생할 명단공개·신용제재 건수에 대한 증가율 가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8억 1,900만원~11억 2,600만원(연평균 1억 6,400만원~2억 2,500만원)으로 추계

3)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2020. 6.

[표 6]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인건비(A1)	132	135	137	140	143	688	138
기관부담금(B1)	17	18	18	19	19	92	18
자산취득비(C1)	10	—	—	—	—	10	2
기본경비(D1)	6	6	6	6	6	29	6
소계(E1=A1+B1+C1+D1)	166	159	162	165	168	819	164
시나리오2							
인건비(A2)	182	185	189	192	196	944	189
기관부담금(B2)	24	25	25	26	27	127	25
자산취득비(C2)	15	—	—	—	—	15	3
기본경비(D2)	8	8	8	8	8	40	8
소계(E2=A2+B2+C2+D2)	229	218	222	227	231	1,126	225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안 제43조의4)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개최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관련 위원회를 둘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개정안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나, 본 추계서는 유사 사례를 토대로 산출

— 2024년 7월 기준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회는 총 16개가 있으며, 이 중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므로 본 추계서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

○ (인적 구성) 유사사례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민간위원 수는 7명으로 가정

○ (회의참석 사례비)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⁴⁾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회의개최 횟수)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7]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위원회 구성·운영 비용추계: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7	7	7	7	7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8.4	8.4	8.4	8.4	8.4	42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향후 관련 예산 및 채용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

4)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p.218)